

#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결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0. 3

제 출 자 : 화순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을 과세대상으로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상정함.

## 2. 주요골자

-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호에 의거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개발제한구역등 자연녹지지역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으로 주거, 상업, 공업지역만 부과지역을 지정 고시하되,
- 우리군의 형편상 군 소재지로서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는 화순읍 지역에 대하여 1999년 현재까지 부과해오던 지역에 한해서만 부과고시 지역으로 지정 고시코자함.

## 3. 관련법규

- 지방세법시행령제195조의1(부과지역의제외토지 :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, 개발제한구역등 자연녹지지역은 제외한다.)
-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(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조례로 정하여 고시)
- 화순군세조례 제83조(부과지역을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고시)

4. 참고자료

- 2000년 3월 9일 군정조정위원회 결정.
-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대한 관련 법규 각 1부.
- 화순읍 도시계획 도면 1부. 끝.

##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

### □ 부과고시지역 결정기준

-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호에 의거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개발제한구역등 자연녹지 지역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으로 주거, 상업, 공업지역만 부과지역을 지정 고시하되,
- 우리군의 형편상 군 소재지로서 도시화가 형성되어 있는 화순읍 지역에 대하여 1999년도 현재까지 부과해오던 지역에 한해서만 부과고시 지역으로 지정코자함.

### □ 부과고시지역

- 도시계획 지역중 주거, 상업, 공업지역
- 화순읍 20개리 (교리, 향정리, 만연리, 훈리, 신기리, 동구리, 유천리, 일십리, 다지리, 광덕리, 삼천리, 이십곡리, 대리, 강정리, 벽라리, 감도리, 계소리, 연양리, 내평리, 서태리)

### □ 부과고시 제외지역

- 춘양면, 청풍면, 이양면, 능주면, 도곡면, 동북면, 남면, 동면의 도시계획 전 지역